

# 부전공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30조의3에 의거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① 부전공 이수라 함은 주전공 이외에 학생들의 학구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 학부(과)의 전공과목을 부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주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입학할 때 소속된 학부(과)의 전공을 말한다.

**제3조(신청자격)** ① 신입학자는 주전공학부(과)에서 2학기 이상, 편입학자는 주전공학부(과)에서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. 다만, 부전공 신청에는 평균평점의 제한이 없다.

② 부전공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**제4조(신청시기)** 신입학자는 2학기, 편입학자는 편입당해 학기, 매 학기말에 신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신청절차)**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학부(과)장과 부전공 학부(과)장을 확인을 받은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소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동일모집단위 학부(과) 내에서의 타 전공에 대한 부전공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부전공 심사 시 신청자의 학업성적 및 별도의 평가요소를 둘 수 있다.

④ 학부(과)의 수용능력, 인원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 중에 부전공자의 수를 학부(과)별로 제한할 수 있다.

⑤ 부전공 이수는 신청을 한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.

⑥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습 및 실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.

⑦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전공 이수대상자를 결정하여 부전공 학부(과)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이수제한)** 삭제(2023.08.01.)

**제7조(학점이수)** ① 부전공 학점이수는 부전공 선택학부(과)의 교과과정표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부전공학부(과)의 과목도 부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필요한 경우 부전공학부(과)에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부전공 신청자는 수강신청 시 학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**제8조(이수취소)** ① 부전공을 취소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부전공을 취소한 자는 이미 이수한 부전공 과목을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.

③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중도에 포기할 시 부전공 학점이 충족된 경우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자격취득)** ①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기에 부전공을 표기하고, 학적부에 이를 기재한다.

**제10조(졸업의 연기 및 등록금)** ①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부전공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연기를 허락할 수 있다.

②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 학기 초에 졸업연기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졸업연기를 허락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증명발급)** ①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주전공학부(과)와 부전공학부(과)의 이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급한다.

② 성적증명서의 주전공 과목과 부전공과목을 이수구분 란에 구분하여 기재한다.

**제12조(학칙의 준용)**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제6조(이수제한)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